제54기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제54기 임시주주총회를 상법 제 363조와 정관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1년 8월 26일(목요일) 오전 09시

2. 장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봉로55 코스모화학(주)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1)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당일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실 때에는 동봉한 주주총회 참석장과 함께 신분증을 접수처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임하실 때에는 주주총회 참석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작성 기명날인하여 대리인이 접수처에 제출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6.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 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 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4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키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미래에셋대우(주)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 홈페이지관리기관: 미래에셋대우(주)
- 인터넷 주소(모바일포함) : https://v.miraeassetdaewoo.co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1년 8월 16일 ~ 2021년 8월 25일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본인확인수단의 종류: 휴대폰 인증,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거래 범용 공인인증서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2021년 8월 11일

COSMO CHEMICAL

코스모화학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 성 덕 (직인 생략)

※ 별첨(정관변경 안)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업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신설 신설 순서조정(26. → 4.) 순서조정(25. → 5.) 순서조정(1. → 6.)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 산화티타늄 및 부산물(황산철, 석고) 제조 및 판매업 2. 세라믹 제조 및 판매업 3. 자성재료 제조 및 판매업 4. 종합수출입업 5. 대기수질 오염방지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계 및 설비업 6.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7. 합성수지제품 제조 및 판매업 8. 가스 제조 및 판매업 9. 화공약품 제조 및 판매업 10. 부동산 임대업 11.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업 12. 기술용역업 13.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가공 제조업 14. 광산 및 광산물 판매업 15. 도소매업(유통업) 16. 종합건설업 17. 전자 상거래업 18. 전기 전자부품 제조 및 임가공업 19. 상품종합 중개업 20. 무기화학 및 유기화학 제품 제조 및 판매업 21. 열공급사업 22. 비료 제조 및 판매업 23. 사료 제조 및 판매업 24. 선박부품 및 철구제품 제조 및 판매업 25. 전기동 및 구리화합물 제조 및 판매업 26. 이차전지 소재의 제조 및 판매업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업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기자동차, 도시광산업, ESS,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2. 폐전지 재활용업 3. 전기전자, 반도체 재료, 친환경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4. 이차전지 소재의 제조 및 판매업 5. 전기동 및 구리화합물 제조 및 판매업 6. 산화티타늄 및 부산물(황산철, 석고) 제조 및 판매업 7. 식품첨가물 제조 및 판매업 8. 화장품 및 의약품 원료 제조 및 판매업 9. 고순도 광촉매 관련 제품 제조 및 판매업 10. 화학물질 판매업 11. 폐기물 수집, 처리, 운반업 12. 세라믹 제조 및 판매업 13. 자성재료 제조 및 판매업 14. 종합수출입업 15. 대기수질 오염방지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계 및 설비업 16.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17. 합성수지제품 제조 및 판매업 18. 가스 제조 및 판매업 19. 화공약품 제조 및 판매업 20. 부동산 임대업 21.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업 22. 기술용역업 23.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가공 제조업 24. 광산 및 광산물 판매업 25. 도소매업(유통업) 26. 종합건설업 27. 전자 상거래업 28. 전기 전자부품 제조 및 임가공업 29. 상품종합 중개업 30. 무기화학 및 유기화학 제품 제조 및 판매업 31. 열공급사업 32. 비료 제조 및 판매업 33. 사료 제조 및 판매업 34. 선박부품 및 철구제품 제조 및 판매업	- 신규 사업 목적추가 및 항목순서 조정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27. 폐기물 처리업 28.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 사업 29. 자회사 등과 상품 및 용역의 공동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 30. 기획, 회계, 전산 등 자회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31.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32.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33. 신기술 개발 및 연구용역사업 34.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35. 부동산 전대업 36. 위 각호의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대사업 및 투자일체	35. 폐기물 처리업 36.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 사업 37. 자회사 등과 상품 및 용역의 공동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 38. 기획, 회계, 전산 등 자회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39.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40.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41. 신기술 개발 및 연구용역사업 42.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43. 부동산 전대업 44. 위 각호의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대사업 및 투자일체	
제11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900억 원은 보통주식으로, 100억 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⑤ 생략	**제11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1,800억 원은 보통주식으로, 200억 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⑤ 생략	전환사채 발행한도 조정.
제12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 또는	**제12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 또는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 조정.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900억 원은 보통주식으로 100억 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⑤ 생략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1,800억 원은 보통주식으로 200억 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⑤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신설 …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21년 8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3조(전환사채 및 신수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대한 적용례)** 제11조 ①항 내지 ③항과 제12조 ①항 내지 ③항에서 설정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한도는 본 정관 시행일(2021.08.26) 이전에 같은 방식으로 기발행된 사채의 액면총액을 개정 후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새로이 계산한다.	및 사채발행과 관련 부칙 신설.

위 임 장

본인은 2021년 8월 26일 개최하는 코스모화학 주식회사 제 54기 임시주주총회(속회, 연회포함)에 (박선길, 황원석)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내용과 같이 찬・반 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1. 주주번호 :

2. 소유 주식수 : 주

3. 의결권 있는 주식수 : 주

4. 위임할 주식수 : 주

5. 주주총회 목적사항

4) 제 1호 의안 : 정관 일부변경의 건

6. 목적사항별 의결권 행사방법(해당부분에 "○" 또는 기타표시)

의안	주주총회 목적사항	찬성	반대
제 1호 의안	정관 일부변경의 건		

7. 수정에 대한 의결권 행사 위임

- 각 호 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상정되는 경우 등에는 대리인이 위 '6. 의결권 행사방법'에서 표시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다만, 아래의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전까지 이와 다른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아래에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지 시 내 용
내 용	

2021년 월 일 시

주 소 :

주민등록(사업자) 번호 : **주 주 명 :** (서명 또는 인)